
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	배 포 일시	2022. 11. 24.(목)
담당 부서	법무실 법무심의관실	책임자	법무심의관 정재민 (02-2110-3164)
		담당자	검사 홍현준 (02-2110-4180)

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「민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「민법」 개정안이 2022. 11. 24.(목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- 위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. 8. 10.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(대안)입니다.

【주요 내용】

- ▶ 상속개시(부모 사망)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* 기회를 부여
 - * 한정승인 :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
- ▶ 본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
 -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, ②법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,
 -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음

1. 개정 추진 배경 및 경과

- 현행법상 피상속인(부모 등)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, 상속인(상속을 받는 사람)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「단순승인, 상속포기, 한정승인」*이 있습니다.

* ‘단순승인’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, ‘상속포기’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, ‘한정승인’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

-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,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,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(「민법」 제1026조 제2호).

-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,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【빚 대물림 사례】

- ①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외조부가 8세 여아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했으나, 법에 무지하여 사망한 아이의 모친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이자 포함 총 5,0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때 한정승인 신청 등을 하지 않아 8세 여아에게 빚 상속
- ② 부친이 2020. 4. 사망하여 이혼한 아이의 모친이 법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했으나, 법에 무지하여 부친에게 1억 3,6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때 한정승인 신청 등을 하지 않아 아이에게 빚 상속
- ③ 간암 투병으로 수년간 병원에서 지냈던 부친이 사망하고, 3개월 후 모친도 금리 연 10%의 카드빚 450만 원을 남긴 채 사망했는데, 친권자로 지정된 친척 등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빚이 상속되어 아이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 급여 55만 원 중 40만 원이 부채 상환에 사용

<2021. 5. 모 언론 기사 참조>

-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, 성년이 된 이후 ‘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’하는 내용의 「민법」 개정안을 2022. 8. 10.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.
-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2022. 11. 24.(목)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.

2. 개정법의 주요 내용

- 개정법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「민법」 제1019조 제4항 신설 - [붙임] 주요 개정 조문 대비표 참조).
- 법의 적용 시점에 관해서는,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
 -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, ②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,
 -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[붙임] 주요 개정 조문 대비표 <부칙> 참조).

3. 향후 계획

- 개정 민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,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【붙임】 주요 개정 조문 대비표

[붙임] 주요 개정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19조(승인, 포기의 기간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(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 ④ <신 설>	제1019조(승인, 포기의 기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(이하 이 조에서 “상속채무 초과사실” 이라 한다)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(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<부 칙> <신 설>	<부 칙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 1.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.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(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하고,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